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. 8. 10 선고 2020가단559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
담당변호사 김호민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1. 7. 20.

판 결 선 고 2021. 8. 10.

주 문

1.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. 9. 30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8. 11. 19. 접수 제4950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C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7160896 양수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6. 15. 'B은 C에게 5,187,856원 및 그 중 3,447,620원에 대하여 2015. 10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원고는 C으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고, 2018. 4. 19.경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
다. 피고는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(이하 '이 사건 지분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대산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8. 11. 19. 접수 제49506호로 2018. 9. 30.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고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이 사건 증여 당시 B은 이 사건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양수금 채권은 위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.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B이 피고에게 위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,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류창성

목록

1. 당진시 D 임야 3,074㎡ 중 1/6 지분
2. 당진시 E 임야 3,372㎡ 중 1/6 지분.끝.

